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9-308호

행정처분 공고

「식물방역법」 제4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8월 6일
농림축산검역본부장

(담당자:식물방제과 정창배 T)054-912-0662, F)054-912-0654, jcb1589@korea.kr)

1. 처분대상

업체명(등록번호)	대표자명	소재지
동부수출포장 (KR720)	황*형	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48

2. 처분근거 및 사유

근거법령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식물방역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10	○ 2018. 8. 1.~현재까지 열처리 작업 실적이 없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

3. 처분내용 : 등록취소

※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농림축산검역본부장

